

육아정책 Brief

육아정책연구소

2025.9.3.

통권 제103호

발행인 | 황옥경 발행처 | 육아정책연구소

발달지연 영유아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시급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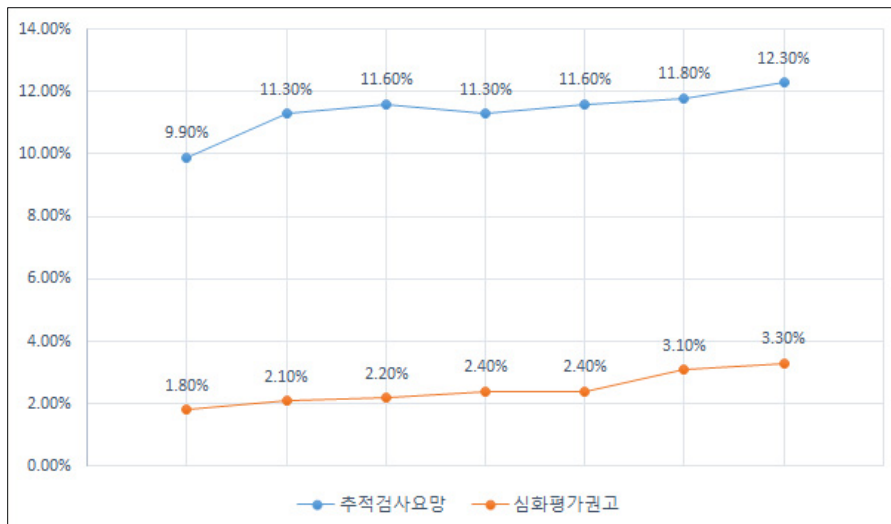
I 발달지연 영유아 증가세 지속

해마다 발달지연 의심 영유아와 장애 영유아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우리나라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에서는 생후 9개월부터 영유아발달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결과는 양호, 추적검사요망, 심화평가권고, 지속관리 요망 총 4단계로 제시되는데, 심화평가권고는 발달지연의 위험이 있으므로 추가 정밀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대상임.

- ▶ 추적검사요망과 심화평가권고를 받은 영유아 비율은 꾸준히 늘어나, 심화평가권고 비율은 전체 수검인원 대비 2017년 1.8%였던 비율이 2023년 3.3%로 증가함. 추적검사요망 비율 역시 증가추세임.¹⁾

[그림 1] 추적검사요망 및 심화평가권고비율의 증가(2017-2023년)



자료: 1) 국민건강보험공단(2024). 2023년 건강검진통계연보, <https://www.nhis.or.kr/nhis/together/wbhaec07000m01.do?mode=view&articleNo=10848529&article.offset=0&articleLimit=10>에서 2025. 3. 14. 인출.

2) 국민건강보험공단(2024) 건강검진통계,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50&tblId=DT_35007_N125&conn_path=I2에서 2025. 3. 14. 인출.

※ 본고는 육아정책연구소 협동과제인 「어린이집과 유치원 장애위험 영유아 조기발견 및 발달지연 종합대책 방안(Ⅲ): 장애위험 영유아선별도구 표준화 및 지원모델 개발(강은진·박진아·김자연·최윤경·황혜신 등, 2024)」에 기초하여 작성됨.

1) 국민건강보험공단(2024) 건강검진통계자료 결과를 시계열 자료로 살펴본 것임. 해당 자료는 발달지연 의심 영유아를 추정하는 통계이며, 추적 정밀검사 후 장애등록 여부가 결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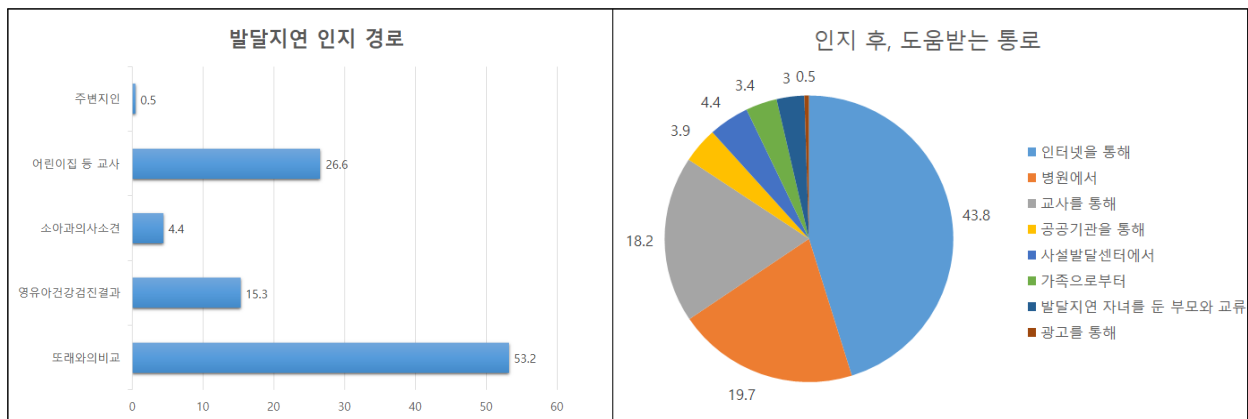
- ▶ 추가 정밀검사를 통해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어 해당 학교(급)에 배치(2023년 기준, 9,188명)되었거나 장애등록을 통해 장애아전문/장애아통합 어린이집 등에 재원하는 영유아의 수(2023년 기준, 13,606명)도 동반 상승함.

특수교육·보육 대상이 아니어서 조기 개입 대상이 아닌 발달지연 영유아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임.

영유아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권고를 받았다고 모두 장애진단을 받는 것은 아님. 이는 결국 발달이 느리다고 의심되지만,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한 채 보호자와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가 담당하는 영유아의 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함.

- ▶ 자녀가 발달이 느리거나 행동문제로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한 부모 20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²⁾, 자녀의 발달지연을 발견하게 된 것은 또래와의 비교(53.2%)를 통해서가 대부분이며, 어린이집 등 교사를 통해서(26.6%), 영유아건강검진 결과(15.3%)를 보고 알게 되었다고 응답함.
- ▶ 해당 부모들은 자녀의 발달지연을 인지한 다음, 정보를 얻기 위한 경로로 1순위 인터넷(카페, SNS, 블로그, 유튜브)(43.8%), 2순위 병원(소아과, 내과 등)(19.7%), 3순위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18.2%)를 통해서라고 응답함. 공공기관(육아종합지원센터, 복지관 등)을 통해서 3.9%로 영유아부모들의 접근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음.
- ▶ 응답 부모의 자녀 대부분(97.5%)은 장애통합반이나 장애전담, 혹은 특수학급에도 재원하는 대상이 아니라 이용을 못 하거나(66.2%), 자녀가 그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24.2%)로 응답해 발달지연이 있지만 특수보육이나 특수교육 대상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2] 발달지연 부모의 설문 응답 결과



자료: 김은설 외(2023). 어린이집과 유치원 장애위험영유아 조기발견 및 발달지원 종합 대책 방안(II): 부모용 도구 개발 및 가족 지원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156-158의 표를 재구성

II 발달지연 영유아를 위한 지원과 운영체계의 실효성 부족

우리나라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 조기발견과 조기개입을 위한 규정과 제도에 근거해, 다부처에 관련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실행을 위한 컨트롤타워는 부재함.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및 정밀검사비 지원에도 보호자의 인식 및 홍보 부족으로 인해 실제 수혜자수는 적음.

- ▶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제공하는 ‘영유아발달선별검사(Korean Developmental Screening Test for Infants and Children: K-DST)’를 통해 발달상의 어려움이 예측되는 영유아를 선별하고, 심화평가권고로 판단된 영유아에게는 발달장애 정밀

2) 김은설 외(2023). 어린이집과 유치원 장애위험 영유아 조기발견 및 발달지원 종합 대책 방안(II): 부모용 도구 개발 및 가족 지원 방안

검사비를 지원함. 그러나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자 중 15.4%만이 지원을 신청³⁾하는 등 보호자의 인식 및 홍보 부족 등의 한계가 있음.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비용지원이 있으나 실제 상담 단가나 수요자 요구에는 부족한 비용임.

- ▶ 특수보육·교육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발달 지연 영유아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조 제7호(“영유아(만9세 미만)의 경우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자료를 통해 등록장애아동이 아니더라도 지원 가능”)에 따라 바우처 지원을 통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는 기준중위소득 180%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월 17만원~ 25만원 내에서 포인트 지원받음.
- ▶ 2023년부터 정부는 장애미등록 영유아 등의 수요에 대응하고 장애 조기개입지원을 위해 서비스 대상 인원을 1만명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을 상향 조정함. 그러나 현재의 바우처 금액은 상담 1회당 30,000원으로 주 2회, 총 8회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어 현재 상담 단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⁴⁾.

발달지연 영유아 발달지원을 위한 조기 발견과 개입 관련 계획이 다부처에 수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을 위한 업무를 전문성을 가지고 연계성 있게 추진하고 주관하는 부서는 부재한 상황임.

- ▶ 제3차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 계획,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 등 교육부,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다부처에서 영유아의 조기 발견과 조기 개입 지원체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발표함.
- ▶ 유보통합 실행계획(2025. 6. 27)에서도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 교육청 특색사업으로 심리·정서지원사업 추진하고 있고,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업무는 교육복지늘봄지원국의 특수교육정책과가 담당해, 발달지연 영유아를 조기 발견해 지원하는 컨트롤타워는 부재한 상황임.
- ▶ 영유아보육법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개정(2024. 1. 23)으로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상담·치료연계 업무와 담당 인력이 추가되었으나 지자체 지원에 따라 운영에서의 격차가 존재함. 이는 기관 이용 영유아 중에서도 이용 기관(유치원, 어린이집), 기관 유형(공립, 사립 등)에 따라 지원 방식 및 여부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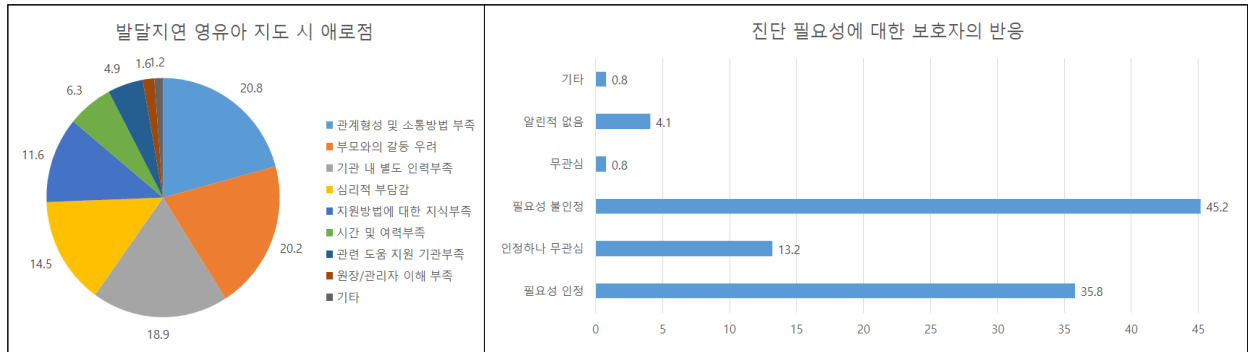
III 보호자 신청에 의존한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이 일과 중에 발달이 느린 영유아를 인지하더라도, 보호자에게 알리고 영유아에게 필요한 지원을 연계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임. 발달검사 실시를 통한 선별 및 선별 결과를 기초로 한 상담서비스 제공 모두 보호자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임.

- ▶ 발달지연 영유아를 담당해 본 교사들(491명)에게 질문한 결과, 해당 영유아의 발달지연을 인지하는 경우는 주로 또래 아이들과의 비교를 통해서(42%)이며, 발달지연을 인지한 이후에도 79%는 원장과 상의하고, 18%는 지켜본다고 응답함.
- ▶ 발달지연 영유아를 담당할 때 어려운 점은 해당 영유아와의 관계형성 및 소통방법 부족(20.8%), 부모와의 갈등 우려(20.2%), 기관 내 별도인력 부족(18.9%), 반의 영유아들을 제대로 지원하고 있지 못하다는 심리적 부담감(14.5%)으로 나타남.
- ▶ 학부모에게 자녀의 발달상황에 대해 상담과 추가 진단이 필요함을 알렸을 때에도 부모들의 45.2%는 필요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고 응답함. 보호자에게는 발달선별평가가 예방적 차원에서 필요한 과정이라는 인식 개선과 함께 교사들에게는 보호자와의 상담, 발달지연 영유아에 대한 지원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와 전문 인력의 연계가 필요함.

3) 이정림·신순문·이정원·조미라·박여정(2021).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4) 김동일 외(2023).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그림 3] 발달지연 영유아 담당 교사의 설문 응답 결과



자료: 강은진 외(2022). 어린이집과 유치원 장애위험영유아 조기발견 및 발달지원 종합 대책 방안(Ⅰ): 실태조사 및 조기선별 도구 개발. 육아정책연구소 p.206-207, 213 표를 재구성

영유아의 발달은 일상적 맥락에서 다각도의 관찰을 통해 평가되어야 함.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사가 교육·보육과정의 하루일과를 운영하는 가운데 영유아의 발달 상황을 살펴봄, 보호자들 역시 자녀의 발달적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지원을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

- ▶ 영유아가 건강하고 보편적인 발달과정을 따르고 있는지, 또래와 비교해 발달이 느리거나 다른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해 교사와 보호자가 함께 파악하여 영유아의 발달에 맞는 적절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함.
- ▶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이러한 취지로 12개월에서 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영유아발달체크도구(K-SIED: Korean Screening Index for Early Development)를 개발해 표준화함. 이는 교사와 부모의 상담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며, 조기 개입이 필요한 대상을 스크리닝하기 위한 목적임.

IV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을 위한 정책 제언

발달지연 영유아에 대한 조기 선별과 적정 개입은 질 높은 예방적 지원의 핵심이라는 보호자들의 인식 제고 및 정보 전달력 강화

- ▶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와 후속 조치에 대해 보호자에게 친절하고 실질적인 안내 필요. 발달지연에 대한 조기 개입이 건강 검진과 같은 예방적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인식 공유 필요
- ▶ SNS를 통해 양육과 발달지원에 대한 정보를 얻는 보호자들에게 교사-보호자-전문가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디지털 기반의 네트워크 구축 필요. 육아정책연구소는 삼성복지재단과 협력하여 영유아 발달지원 플랫폼을 12월에 오픈할 예정임.

영유아기부터 기관 유형을 초월한 통합적 지원체계 필요

- ▶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발달지연 영유아를 발견하더라도 지속적이고 연계 가능한 개입체계가 미흡함. 이에 반해 초·중등 학교에서 [학교보건법 제11조]에 기반 한 정서·행동특성검사와 Wee 센터 연계 등 제도화된 관리 체계가 마련되어 있으나 영유아기는 제도적 공백 상태임.
- ▶ 특히 유치원은 [교육기본법]에서 명시된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보건교사나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기준이 없고, 유보통합 논의 속에서도 어린이집은 발달지연 영유아의 지원체계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됨.

범정부 통합 영유아 건강지원체계의 컨트롤 타워 구축 및 제도 정비 필요

- ▶ 교육부 내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모든 영유아를 지원하는 전담부서 신설을 통해 발달지연 영유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책 총괄 기능이 마련되어야 하며, 시도교육청,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 복지기관 간 기능 중복 없는 연계 전달체계로 개편이 필요함. 다수의 유관사업은 신청자 중심의 일회적, 단기적 지원에 그치고 있어 연속성과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 ▶ 특히 최근 제정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초·중·고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대한 교육청, 복지·보건기관 등의 통합적 지원 체계 구축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영유아기 역시 해당 법체계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할 것임.

지역 기반 영유아발달지원센터 설립 및 전문인력 배치

- ▶ 발달지원 전문코디네이터(가칭)를 지역 거점 국공립유치원이나 국공립어린이집,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 배치하여, 발달지연 영유아의 조기 선별, 서비스 연계, 학부모 상담, 교사 역량 지원 등의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 ▶ 아울러 지역 영유아발달지원센터 설치를 조례화하여 (선도사례: 서초아이발달센터, 제주아이발달센터 등), 가정에서부터 발달지연 영유아의 일과기반 조기 개입이 가능하고, 지역 유관기관(육아종합지원센터, 공공발달센터, 교육청 등)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어디에서든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임.

강은진 선임연구위원 ejkang@kicce.re.kr

육아정책 Brief

통권 제103호